

## 제98회 학교운영위원회 안건발의서

<b>제 안 안건명</b>	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안)
--------------------	-------------------------------

<b>안 건 번호</b>	2018-15
-------------------	---------

발의년월일 : 2018. 4. 3.

제 안 자 : 학 교 장

소 관 부 서 : 행 정 실

### 1. 제안이유

간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거 제11기 간중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이 완료된 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내실있는 단위학교의 자치 기구를 구성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관련근거 :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간중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나. 구성 및 임기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인으로 하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 선출방법 :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b>제 안 안건명</b>	2018학년도 학생 건강검사기관 선정(안)
--------------------	-------------------------

<b>안 건 번 호</b>	2018-16
--------------------	---------

발의년월일 : 2018. 4. 3.  
제 안 자 : 학 교 장  
소 관 부 서 : 교 무 부

### 1. 제안이유

성장기 학생에 대한 정기 건강검사를 통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 또는 건강상 결함의 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지도, 건강 상담 등 적절한 보호대책 강구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 도모

### 2. 주요내용

#### 가. 학생건강검진 내용

- 1) 대상 학년 : 1·4학년
- 2) 검진 기간 : 4월 ~ 8월
- 3) 검진 항목 및 비용

항목		초 1	초4	
		일반학생	일반학생	비만학생
건강검진 및 소변검사 - 근·골격 및 척추      - 눈(시력, 색각, 안질환) - 귀(청력, 귓병)      - 콧병 - 목병                      - 피부병 - 기관능력              - 진찰 및 상담 ※ 키, 몸무게, 비만도, 혈압 측정 포함		7,980원	7,980원	
구강검진: 충치 유무, 치주질환, 부정교합		7,060원		
소변검사: 요단백, 요잠혈		890원		
병 리 검 사	비만학생 혈액검사 식전혈당, 총콜레스테롤, AST(SGOT), ALT(SGPT)			22,360원
	혈액형 검사	4,180원		
계		20,110원	15,930원	22,360원

- 4) 검진 수수료 :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일괄 지출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 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금액

## 나. 학생건강검진 방법

- 1) 검진기관은 문진표를 아동에게 작성, 제출하게 한 후 검진을 실시한다.
- 2) 검진기관은 검진실시 후 학부모와 학교장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 3) 건강검진은 검진기관과 협의해서 정한다.

## 다. 검진기관의 선정기준

-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건강검진 기관 중 초등학생 건강검진 실시기관  
본교는 지역여건상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어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 기관(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가족보건의회)으로 선정하고자 함.
- 2) 아동의 검사결과지 통보  
(검진 완료 후 15일 이내에 학생 또는 학부모, 학교장에게 알림)
- 3) 초등학교 건강검사 실시기관 중 검사요청기관

검진기관	위 치	전화번호(☎)	구강검진포함 여부
<u>인구보건복지협회</u> <u>전북지회</u> <u>가족보건의회</u>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 1557-1	240 - 2331	포함

## 라. 유의사항

- 1) 건강검사 검진기관 선정, 실시 등의 이유로 어떤 혜택도 받지 않는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건강검사의 부실을 방지
- 2) 의료기관간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건강검사의 질적 저하 또는 공정거래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실시

## 3. 심의내용

- 1) 건강검진기관 승인 완화 사항(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가족보건의회)
- 2) 검진기관 이용 기간 4월 ~ 8월

<b>제 안 안건명</b>	2018학년도 수련활동 계획(안)
--------------------	--------------------

<b>안 건 번호</b>	2018-17
-------------------	---------

발의년월일 : 2018. 4. 3.  
제 안 자 : 학 교 장  
소 관 부 서 : 교 무 부

### 1. 제안이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안전하고 유익한 수련활동을 운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행사명: 2018학년도 수련활동
- 나. 행사기간: 2018년 6월 25일(월) ~ 6월 26일(화)
- 다. 참여대상: 5 ~ 6학년 학생 23명, 교감 1명, 교사 2명(5학년·6학년 담임교사)
- 라. 학습장소: 완주군 구이면 청정인성수련원
- 마. 세부 일정

일자	운영시간	운영내용	비고
6.25 (월)	9:00~10:30	학교에서 이동 및 도착	버스 이용
	10:30~12:00	숙소배정 및 여는 마당(입소식)	청정인성수련원
	12:00~13:00	점심식사	
	13:00~13:30	안전교육 및 조편성	
	13:30~18:00	모험레포츠 및 수상레포츠 활동	
	18:00~19:00	저녁식사	
	19:00~21:30	우리들 콘서트 및 청정페스티벌	
	21:30~	생활점검 및 취침	
6.26 (화)	7:00~7:30	기상 및 아침활동	청정인성수련원
	7:30~8:30	아침식사	
	8:30~11:00	진로활동(감수성활동)	
	11:00~12:30	학교로 출발 및 도착	버스 이용
	12:30~13:20	점심식사	학교
	13:20~14:50	수련활동 반성 및 설문 조사	

바. 소요예산(안)

1) 1인당 예상소요액 : 44,000원

2) 1인당 산출내역

구 분	금 액(원)	세 부 내 역
숙 박 비	6,800	1박 6,800원 × 1박
식 비	14,700	1식 4,900원 × 3식
기본시설 및 기타부대시설사용료	4,000	강당, 집회장, 체육시설, 음향, 조명, 운동장, 수영장 등
프로그램운영비	7,000	수련거리지도비
	5,500	모험체험활동비 (고공활강,동굴체험,세줄타기,그물오르기)
	6,000	수상체험활동비 (고무보트)
계	44,000	※ 인솔교사비용 : 21,500원(숙박비+식비) ※ 차량 미포함

3) 총계: 1인당(44,000원) × 23명 = 1,012,000원

붙임 2018학년도 수련활동 사전 답사 보고서 1부(추후 첨부). 끝.

<b>제안 안건명</b>	<b>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안)</b>
-------------------	----------------------------

<b>안건 번호</b>	2018-18
------------------	---------

발의년월일 : 2018. 4. 3.  
제안자 : 학교장  
소관부서 : 인성인권안전부

### 1. 제안이유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의 일부 내용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2018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 계획에 의거하여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학교규칙: 생활규정과 중복 내용 삭제, 초등학교와 맞지 않는 용어 수정 및 삭제
- 나. 생활규정: 표창에 관련된 내용 수정
- 다. 기타: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개정안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라. 신규 대조표

#### <학교규칙>

조항	수정 전(구)	수정 후(신)	비고
제31조	(징계이외의 지도방법) 징계 이외의 지도 방법(교육법)은 학교에서 학습권과 교육권의 보호 및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① 교육상황별로 <b>교육법</b> 을 가할 수 있다. 4. 텃밭식물 가꾸기(문제 상황 발생시)	(징계이외의 지도방법) ( <b>교육법</b> ) 용어 삭제 ① 교육상황별로 <u>다음의 지도방법</u> 을 적용할 수 있다.(수정) 4. <b>삭제</b>	
제35조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학생생활협약)을 선정하여 <b>다음 각 항과 같이</b> 적용한다. ① 학생생활협약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학생생활협약)을 선정하여 <b>생활 규정에 따라</b> 적용한다. ① <b>삭제</b>	중복으로 인함

<생활규정>

조항	수정 전(구)	수정 후(신)	비고
제9조	(내용) 선행상, 효행상 표창을 심의·의결한다.	(내용) <u>모범학생 추천대상자</u> ---(수정)	
제10조	(시상) ① 선행상과 효행상 표창은--- ② 정기시상은 5월--- ③ 임시시상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상) ① (삭제) ② (삭제) ③ <u>모범학생 추천이 필요할 때</u> ---(수정)	공문
제12조	(자격) 표창 대상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⑥	(자격) 표창 대상의 자격 요건은 <u>공문의 목적 및 표창분야추천 기준에 따른다.</u> (수정) ①~⑥ (삭제)	공문
제21조	(표현의 자유) ①~④ (단,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인격훼손,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조언·삭제할 수 있다.)	(추가)	
제38조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4. 복도에서 <u>살금살금</u> 걷기 10. 학교 급식 <u>맛있게 다</u> 먹기	4. 복도에서 <u>뛰지 않기</u> (수정) 10. 학교 급식 <u>골고루</u> 먹기(수정)	

- 붙임 1. 간중초등학교 학교 규칙(2018개정) 1부  
2. 간중초등학교 생활 규정(2018개정) 1부

# 간중초등학교 학교 규칙

제정	2000. 12. 16.
제1차 개정	2001. 2. 23.
제2차 개정	2003. 1. 16.
제3차 개정	2005. 2. 25.
제4차 개정	2006. 2. 25.
제5차 개정	2011. 4. 13.
제6차 개정	2013. 2. 20.
제7차 개정	2014. 4. 9.
제8차 개정	2017. 2. 6.
제9차 개정	2018. 4. 11.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간중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간중길 39(간중리 616-1)에 둔다.

## 제 2 장 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받은 자는 1회에 한하여 조기진급,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제5조(학년.학기) 학기는 매 학년도를 2학기로 나누되,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① 초·중등교육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제3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여름방학 3. 겨울방학 4. 개교년월일 5. 재량휴업일

② 제1항 2호, 3호, 4호, 5호의 휴가기간은 법정 수업일수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실시한다.

③ 학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교육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실습 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 제 3 장 학급편성 및 학생정원

제7조(학급편성) 학급편성은 교육장이 통보하는 학급편성 기준에 의하여 편성한다.

제8조(학급정원)

- ① 학급정원은 교육장이 통보하는 학급편성 기준에 의한다.
- ② 학교장은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제 4 장 교과과정, 수업일수, 평가, 과정수료, 졸업

**제9조(교과)**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령에 의한다.

**제10조(방과후 교육활동)** 학교장은 학생의 방과후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육수요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주5일 수업제 적용으로 매학년 전라북도교육청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다만, 학교장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교외체험학습)**

-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현장체험학습은 교과내용별 현장학습장 발굴 활용, 체험학습 운영 방법 적정, 도·농간 교류 학습문제점 개선을 통한 효율적 운영, 가족동반 체험학습 강화, 흡사랑 체험학습 강화 등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 ③ 현장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테마중심 현장체험학습 기간과 도·농간 체험교류학습 기간은 2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실시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④ 현장체험학습의 활동유형은 활동중심 현장체험학습, 학습체험중심 현장학습, 야영수련식 체험학습, 학교간 개별위탁 체험학습, 학교간 자체집단 체험학습, 가족단위 여행 체험학습, 흡사랑 체험학습 운영 등으로 한다.
- ⑤ 테마중심 현장체험학습과 도·농간 체험교류학습의 운영방안은 필요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학교장이 결정하여 시행한다.
- ⑥ 이 외 현장체험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3조(평가)** 학교장은 평가시기,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4조(졸업)**

- ①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 ②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 5 장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

**제15조(취학의무의 유예 면제 등)**

- ①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는 학교장이 의무 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유예 또는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읍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취학의무의 면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1. 질병 등으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
  - 2. 행방불명 중인 자
  - 3. 외국에서 취학하고 있는 자
  - 4. 기타 학교장이 면제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제 6 장 입학, 전학, 편입학

### 제16조(입학 시기 및 편입학 시기)

- ①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② 편입학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7조(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본교 통학구역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①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만 6세에 도달한 적령아동 및 취학유예를 받은 학령아동
- ② 학생수용능력에 여유가 있는 경우 교육장이 학교별로 취학을 허용할 수 있는 만 5세의 아동으로 고시한 아동

### 제18조(취학학교의 변경)

- ①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 외의 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학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입학을 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아동의 거주지 관할 읍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전학)** 전학의 절차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다.

### 제20조(편입학)

- ① 외국체류 중 귀국한 아동의 편입학은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한다.
- ②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이어야 한다.
- ③ 제①항의 편입학 아동은 학교장이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 7 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1조(목적)** 이 지침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29.)에 따라 초등학교의 장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시행 방침)**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학부모와 교원 대상으로 조기진급 등에 관해 홍보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③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 ④ 조기진급 등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 ⑤ 조기진급 등의 대상자 선정 시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최대한 유지한다.

**제23조(조기진급·조기졸업)**

-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 하고자 하는 경우, 초등학교는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 ②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졸업 하고자 하는 경우 초등학교는 5학년에서 조기졸업할 수 있다.

**제24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기준)** 초등학교장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 ① 초등학교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통합교과)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 또는 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으로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픽아드에 국가대표로 참가한 자

**제25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학년 초 1개월(3월 말) 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초 2개월(4월 말) 이내에 한다.
-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제24조의 기준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진급·졸업 대상자”라 한다)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이 제③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제27조 제①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⑤ 조기진급·졸업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 ⑥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 ① 학교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①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 ② 학교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초등학교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㉞, ㉟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㉞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 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③ 학교장이 제①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제27조 제①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④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 제27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5조 제④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제26조 제③항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⑥ 제①항부터 제⑤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 제2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제27조 제①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제27조 제①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①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 8 장 학생의 포상과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29조(학생포상) 학교장은 품행이 바르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 및 효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학생의 기능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자 또는 공로가 남보다 뛰어난 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30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단, 어떠한 종류의 체벌도 허용하지 않는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님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학생의 징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후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출석정지

**제31조(징계이외의 지도방법)** 징계이외의 지도방법은 학교에서 학습권과 교육권의 보호 및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으로, 교육상 행해지는 여러 가지 불이익 처분인 학생생활지도의 한 방법으로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이 적용한다.

① 교육상황별로 **다음의 지도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생각하는 책상(교실 뒤편에 마련된 책상에서 자기감정 통제하기)
2. 성찰 교실(상담실에서 관리자나 상담교사와 함께 자기감정 통제하기)
3. 사과편지 쓰기(학생 간 괴롭힘이 발생 했을 때)
4. 반성 캠페인(문제 행동에 대한 캠페인성 문구 쓰기)
5. 선생님, 부모님께 서명 받아오기(문제행동에 대해 기술하게 한 후)
6. 운동장 걷기의 체력단련하기(문제행동에 따라 목표치를 달리하기)

② 적용방법별로 **다음의 지도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예화자료를 읽거나 보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기
2. 다양한 대체 활동(급식정리, 칠판지우기, 쓰레기통 비우기, 분리수거하기)
3. 자신이 선택하여 외부 또는 교실 봉사활동
4. 학급자치규율(학급규칙)을 통한 문제행동지도

③ 기타 징계이외의 지도방법에 관한 세부규정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32조(두발·복장 등 용모)** 학생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인격을 존중하되,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두발은 자유로이 하되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 ② 옷차림은 항상 검소하고 단정하게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 ③ 신발 및 가방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검소한 것으로 사용한다.
- ④ 실외화를 신고 현관까지 와 실내화로 갈아 신으며, 실내화를 신고 등·하교를 하지 않는다.
- ⑤ 얼굴에 지나치게 짙은 화장을 하지 않는다.

**제33조(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소지품 검사는 반드시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급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지양하되 다음 각 항과 같이 적용한다.

- ① 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구류, 칼 등)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된다.
- ②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①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제③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 ⑤ 제②항에 따른 소지품의 검사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분리하여 학생들이 없는 공간에서 별도로 담임교사 또는 생활지도 담당교사(남, 여)를 두어 실시한다.

**제34조(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소지는 학부모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항과 같이 적용한다.

- ① 등교와 동시에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하교 후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다.
- ③ 제①항의 사항을 어기고 교내에서 또는 수업 중 휴대전화 벨이 울렸을 경우가 발견되면, 첫 번째는 구두주의, 두 번째는 일정시간 사용제한, 세 번째부터는 회수 후 담임교사가 보관하거나 학부모와 상담하고 돌려주도록 한다.
- ④ 기타 전자기기의 사용 제한: MP3 플레이어, PMP, PDA, 디지털 카메라, 게임기기, 등에 대해서도 본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한다.

**제35조(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학생생활협약)을 선정하여 **생활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제36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 ① 본교의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생, 학부모, 교원대표로 구성하며(인권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포함 가능), 학생의 비율은 **40%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학년도를 기준으로 삼아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는 회의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한다.

## 제 9 장 학생의 자치활동

**제37조(학생의 자치활동 보장)**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 10 장 학칙 개정

**제38조(학칙개정)**

- ① 학칙의 개정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협의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교육장의 인가를 받은 후 시행한다.
- ②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 칙(제1차 개정 2001.2.23.)**

- 1. (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세척) 이 학칙은 시행 상 필요한 경우 시행세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제2차 개정 2003.1.16.)**

- 1. (시행일) 이 학칙은 이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세척) 이 학칙은 시행 상 필요한 경우 시행세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제3차 개정 2005.2.25.)**

1. (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2. (시행세칙) 이 학칙은 시행 상 필요한 경우 시행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제4차 개정 2006.2.25.)**

1. (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2. (시행세칙) 이 학칙은 시행 상 필요한 경우 시행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제5차 개정 2011.4.13.)**

1. (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2. (시행세칙) 이 학칙은 시행 상 필요한 경우 시행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제6차 개정 2013.2.13.)**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차 개정 2014.4.9.)**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차 개정 2017.2.6.)**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차 개정 2018.4.1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간중초등학교 생활 규정

제정 2000. 12. 16.  
제1차 개정 2011. 4. 20.  
제2차 개정 2014. 4. 9.  
제3차 개정 2017. 2. 6.  
제4차 개정 2018. 4. 11.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범위)** 본 규정은 ‘간중초등학교 생활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간중초등학교 학칙에 의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제17조(학생자치활동), 제18조(학생의 인권보장)와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4항(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전라북도의 학생인권조례(제3781호)」에 의거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존중되는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고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필요한 규칙을 민주적 절차로 제정하고 교육적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생활지도 원칙)**

- ① 학생으로 하여금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한다.
- ② 학생의 교육받을 기회를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 ③ 학생의 품성 도야와 인격 함양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운영한다.
- ④ 문제 행위에 대한 징계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⑤ 징계 시 대상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반드시 참작한다.

##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5조(기능)**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생활교육 및 징계 사안에 대하여 심의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심의사안과 관련된 학생과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학생·학부모는 통보받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구성 및 의결)**

- ① 본 위원회는 교감을 비롯한 모든 교사로 구성한다.
- ② 교감은 본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운영 전반을 통괄하고, 생활지도 담당교사는 본 위원회의 간사로서 사무를 주관한다.
- ③ 본 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사안 설명) 본 위원회는 심의 전에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제5조의 사항에 관한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학교장 재심 부의)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요구할 수 있다.

### 제3장 모범학생 표창

제9조(내용) 모범학생 추천대상자 표창을 심의·의결한다.

제10조(시상) 모범학생 추천이 필요할 때 학생생활교육위원 1/3이상의 발의에 의해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11조(표창 대상) 담임교사와 기타교사는 표창 대상 학생을 추천하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하여 시상한다.

제12조(자격) 표창 대상의 자격 요건은 공문의 목적 및 표창분야·추천 기준에 따른다.

### 제4장 학생 생활

제13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바람직한 생활 태도를 기르고, 기본 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타인을 배려하고 교사의 수업권 및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 ④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 ⑤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14조(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 ①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방과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5조(휴식을 취할 권리)

-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두발·복장 등 용모) 학생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인격을 존중하되,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두발은 자유로이 하되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 ② 옷차림은 항상 검소하고 단정하게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 ③ 신발 및 가방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검소한 것으로 사용한다.
- ④ 실외화를 신고 현관까지 와 실내화로 갈아 신으며, 실내화를 신고 등·하교를 하지 않는다.

- ⑤ 얼굴에 지나치게 짙은 화장을 하지 않는다.

**제17조(사생활의 자유)**

- ①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안 된다. 소지품의 검사 또는 압수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에 한하며, 동성의 교사가 실시하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는 지양한다.
- ②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해서는 안 된다.(단 사적 기록물에 대한 검사행위가 아니라 인성교육이나 글쓰기 교육 차원에서 선생님과 대화 글쓰기, 독서감상문 쓰기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8조(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소지는 학부모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항과 같이 적용한다.

- ① 등교와 동시에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하교 후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다.
- ③ 제①항의 사항을 어기고 교내에서 또는 수업 중 휴대전화 벨이 울렸을 경우가 발견되면, 첫 번째는 구두주의, 두 번째는 일정시간 사용제한, 세 번째부터는 회수 후 담임교사가 보관하거나 학부모와 상담하고 돌려주도록 한다.
- ④ 기타 전자기기의 사용 제한: MP3 플레이어, PMP, PDA, 디지털 카메라, 게임기기 등에 대해서도 본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한다.

**제19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교육비 등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 ③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0조(양심·종교의 자유)**

- 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여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제21조(표현의 자유)**

- ①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④ 학교의 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단,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인격 훼손,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조언·삭제할 수 있다.)

**제22조(건강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생리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 ④ 학생 가출 또는 행방불명 시

## 제5장 학생 교육 및 징계

**제24조(체벌금지)** 학교에서 체벌의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도구에 의한 체벌
- ②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 ③ 반복적, 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 ④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⑤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25조(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교육적 상담 및 조언
- ② 교육환경 조성
- ③ 시정 요구
- ④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⑤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 ⑥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26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①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 ②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 3. 적절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 4. 적절한 수준의 방과후 교육
  - 5.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 6. 학부모 통보 및 상담
  - 7. 기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 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 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28조(징계원칙)**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등)에 의한 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②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29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에 대하여 훈육과 훈계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① 주의는 즉시 또는 별도 시간에 지도한다.
- ② 학교 내 봉사는 10일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 ③ 사회봉사는 6일 미만으로 한다.
- ④ 특별 교육은 특별 교육 이수 및 치료 기간으로 한다.
- ⑤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제30조(징계의 유형별 운영 방법)**

① 학교 내 봉사의 징계대상 학생은 등교하여 담당교사의 지도하에 다음의 내용을 실시한다.

1. 학교 환경미화 작업
2. 학교 행사 보조
3. 교육업무 보조
4. 교재, 교구 정비
5. 기타 학생의 특성에 맞는 특별 상담 및 지도

② 사회봉사의 경우 징계대상 학생은 징계기간동안 매일 등교하여 출석 점검을 받고 협조기관 및 단체에서 다음의 봉사활동을 실시한 후 귀교하여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한다.

1.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2.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노인정, 장애인 재활기관, 사회복지관 등)

③ 특별교육의 경우 다음의 전문기관에 매일 등교하여 출석 점검을 받고 교육 또는 치료과정을 이수한 후 귀교하여 교육 이수결과를 보고한다.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 교육과정 이수
2. 교육감이 위탁 교육을 계획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콜 중독 치료 학교의 교육 이수
3. 행동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 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 자원 봉사자 사회 복지사 등과 연계하여 1:1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④ 출석정지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음
3.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교육 기회를 제공함

⑤ 제30조 ①, ②, ③항은 출석 처리한다.

⑥ 제30조 ①, ②항의 봉사활동 시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31조(징계기준)** 징계 기준은 별도 양식을 참조한다.

**제32조(심의 절차)**

① 학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에 해당하는 징계는 담임교사의 의견과 담당 교사의 진상조사를 근거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② 제32조 ①항의 결과에 대해 보호자에게 의견을 소명할 기회를 줄 수 있다.

**제33조(징계 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이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34조(징계 학생 시험 응시)**

①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은 징계기간 중에 정기고사에 응할 수 있다.

② 정기고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5조(징계 경감)**

① 징계 대상 학생이 과거에 학교장이나 외부기관으로부터 선행상이나 기타의 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경감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징계기간 중이라도 뚜렷한 반성이 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책임 지도를 전제로 징계기간을 경감 할 수 있다.

**제36조(징계 기간 중 해제)**

① 학교내 봉사, 사회봉사중인 학생에 대하여 뚜렷한 반성이 되었다고 판단될 때 교무부장은 담임교사,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상담교사와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해제를 건의하여 해제할 수 있다.

② 특별 교육과 출석정지중인 학생은 기간 만료 후 제36조 ①항에 의거 해제할 수 있다.

③ 제36조 ①, ②항의 징계해제 학생은 본교 선도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연서로 서약서를 제출한다.

**제37조(징계이외의 지도방법)** 징계이외의 지도방법은 학교에서 학습권과 교육권의 보호 및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으로, 교육상 행해지는 여러 가지 불이익 처분인 학생생활교육의 한 방법으로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이 적용한다.

① 교육상황별로 다음의 지도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생각하는 책상(교실 뒤편에 마련된 책상에서 자기감정 통제하기)
2. 성찰 교실(상담실에서 관리자나 상담교사와 함께 자기감정 통제하기)
3. 사과편지 쓰기(학생 간 괴롭힘이 발생 했을 때)
4. 반성 캠페인(문제 행동에 대한 캠페인성 문구 쓰기)
5. 선생님, 부모님께 서명 받아오기(문제행동에 대해 기술하게 한 후)
6. 운동장 걷기의 체력단련하기(문제행동에 따라 목표치를 달리하기)

② 적용방법별로 다음의 지도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예화자료를 읽거나 보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기
2. 다양한 대체 활동(급식정리, 칠판지우기, 쓰레기통 비우기, 분리수거하기)
3. 자신이 선택하여 외부 또는 교실 봉사활동
4. 학급자치규율(학급규칙)을 통한 문제행동지도

③ 기타 징계이외의 지도방법에 관한 세부규정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38조(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학생생활협약)을 선정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이 적용한다.

① 학생생활협약은 학칙에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꼭 지키고자 하는 사항을 선정한다.

1. 매일 아침 인사하기
2. 아침 등교시간(08:50) 지키기
3. 수업시간에 친구와 장난치지 않기
4. 복도에서 뛰지 않기
5. 에너지 절약하기(전기, 물 아껴쓰기)
6. 실내화 신고 밖으로 나오지 않기
7. 꽃이나 나무 등의 식물 함부로 꺾지 않기
8.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나눔과 배려 실천하기
9. 청소시간에 청소 잘하기
10. 학교 급식 골고루 먹기
11. 교실이나 복도 등에 껌이나 침을 뱉지 않고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기
12. 바르고 고운말 사용하기

② 제①항에 따라 학급, 학년 학생생활협약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 제6장 규정의 개정

**제39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 ① 본교의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생, 학부모, 교원대표로 구성하며(인권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포함 가능), 학생의 비율은 40%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학년도를 기준으로 삼아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는 회의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한다.

**제40조(개정안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1조(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③ 학생회 규정의 개정은 학생회 정기 회의에서 개정한다.

**제42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하여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개정 심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학생 생활지도 기준표>

구분	항	행 위 내 용	징 계					
			주의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예절	1	예의가 바르지 못함						
	2	용의가 단정치 못함						
	3	언행이 불손함						
	4	기타 학생다운 행동을 하지 않음						
	5	성행이 불량하여 주변으로부터 학교에 통보됨						
준법	6	학생의 지정된 출입문을 이용하지 않음						
	7	공중도덕을 위반함						
	8	학교 단체 행사에 상당한 이유없이 불참함						
	9	수업준비, 청소, 주변활동, 기타 학생의 의무이행에 태만함						
	10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됨						
	11	오토바이, 승용차를 유희적으로 타거나 폭주 및 무면허임						
	12	학교와 교사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의 행위를 함						
	13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함						
	14	징계지도에 불응함						
	15	유언비어 유포에 적극 가담하거나 예비음모를 함						
	16	경찰서에 구속 석방됨						
	17	인장 및 제증명을 위조함						
	18	현장실습을 고의적으로 회피함						
	19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음						
	20	불온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함						
	21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후 석방된 학생						
	22	인화물질소지 및 담임교사의 허락없이 불을 놓은 행위를 함						
	23	고의로 방화 행위를 함						
	24	공문서를 위조 및 변조하여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를 함						
	25	환경오염을 일으켜 타인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함						
	26	학생간 무고행위로 피해를 입힘						
	수업	27	수업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28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함					
29		수업을 거부함						
30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함						
31		시험을 거부함						
32		백지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함						
33		시험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함						
34		학력이 열등하여 학업이수의 가능성이 없음						

구분	항	행 위 내 용	징 계				
			주의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근태	35	무단결과, 무단조퇴를 함					
	36	무단결과, 무단조퇴를 상습적으로 함					
	37	무단가출하여 학교에 물의를 야기함					
	38	무단결석이 10일 이상임					
	39	무단결석이 15일 이상임					
	40	무단결석이 20일 이상임					
약물	41	흡연 또는 음주를 함					
	42	흡연 또는 음주가 상습적임					
	43	본드, 대마초, 환각제등을 사용함					
	44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복용함					
폭력	45	타인을 구타하거나 흉기를 소지함					
	46	남에게 성희롱(성폭행)을 함					
	47	욕설을 남용하거나 싸움을 함					
	48	흉기를 폭행에 사용함					
	49	집단폭행을 모의했거나 선동, 가담함					
	50	공공시설물, 게시물, 집기류 등을 파손함					
퇴폐 행위	51	도박을 함					
	52	불량서적을 소지, 탐독함					
	53	불량비디오 및 녹음테이프를 시청함					
	54	학생 출입금지 장소에 출입함					
	55	상습적으로 도박을 함					
	56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함					
	57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함					
금품	58	공금을 유용한 학생					
	59	부당하게 금품을 각출함					
	60	금품을 절취, 사취함					
	61	금품을 강탈함					
집단	62	학생을 선동하거나 가담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함					
	63	불법집회 또는 불량 씨클에 가입함					
	64	학교장의 허가없이 대외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함					
	65	수업, 학교행사를 거부하거나 선동함					
	66	동맹휴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함					
기타	67	동일 학년에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때는 가중 처벌함					
	68	징계기준이외의 사항은 생활지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함					

제안 안건명	2017학년도 간중초등학교회계 결산(안)
-----------	------------------------

안건 번호	2018-19
----------	---------

발의년월일 : 2018. 4. 3.

제안자 : 학교장

소관부서 : 행정실

### 1. 제안이유

2017학년도 간중초등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타당성·합리성을 평가·검토하고 효율적 자원배분 및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유도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세입·세출결산 총괄표

(단위:원)

예산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비고
530,007,000	534,281,500	530,930,660	519,854,360	11,076,300	

잉여금 처리상황

(단위:원)

세계 잉여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순세계잉여금 (C=A-B)
세입결산	세출결산	차액(A)	명시	사고	계속비	소계(B)	
530,930,660	519,854,360	11,076,300	2,845,000	0	0	2,845,000	8,231,300

세입·세출 결산내역

(단위:원)

세입			세출	
장	관	결산액	정책사업	결산액
이전수입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421,851,670	인적자원 운용	4,335,100
	기타이전수입	166,390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103,782,860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97,071,830	기본적 교육활동	135,437,570
	행정활동수입	588,360	선택적 교육활동	86,142,730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11,252,410	교육활동 지원	59,051,380
			학교 일반운영	131,104,720
			학교 재무활동	0
합계		530,930,660	합계	519,854,360

### 3. 붙임

○ 2017학년도 간중초등학교회계 세입·세출결산서 1부. 끝.

# 2017학년도 세입결산서

(단위 : 원)

과 목				예산액	예산현액	결산액	산출기초
장	관	항	목				
1. 이전수입				422,271,000	422,271,000	422,018,060	
1.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422,104,000	422,104,000	421,851,670	
1.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수입				422,104,000	422,104,000	421,851,670	
1. 학교회계전입금				422,104,000	422,104,000	421,851,670	학교운영비전입금 = 196,354,000
							목적사업비전입금 = 225,497,670
2. 기타이전수입				167,000	167,000	166,390	
1. 학교회계간이전수입				167,000	167,000	166,390	
1. 다른학교회계전입금				167,000	167,000	166,390	다른학교회계전입금 = 166,390
2. 자체수입				100,759,000	100,759,000	97,660,190	
1. 학부모부담수입				100,170,000	100,170,000	97,071,830	
1. 수익자부담수입				100,170,000	100,170,000	97,071,830	
1. 급식비				10,049,000	10,049,000	10,048,620	급식비 = 10,048,620
2. 방과후학교활동비				74,929,000	74,929,000	72,083,500	방과후학교활동비 = 72,083,500
3. 현장체험학습비				1,586,000	1,586,000	1,585,200	현장체험학습비 = 1,585,200
4. 누리과정비				13,606,000	13,606,000	13,354,510	누리과정비 = 13,354,510
2. 행정활동수입				589,000	589,000	588,360	
1. 사용료및수수료				173,000	173,000	172,500	
1. 사용료및수수료				173,000	173,000	172,500	사용료 = 172,500
2. 기타행정활동수입				416,000	416,000	415,860	
1. 이자수입				296,000	296,000	296,160	이자수입 = 296,160

# 2017학년도 세입결산서

(단위 : 원)

과 목				예산액	예산현액	결산액	산출기초
장	관	항	목				
			2. 기타행정활동수입	120,000	120,000	119,700	
							기타행정활동수입 = 119,700
3. 기타수입				6,977,000	11,251,500	11,252,410	
1. 전년도이월금				6,977,000	11,251,500	11,252,410	
1. 순세계잉여금				6,977,000	6,977,000	6,977,910	
1. 순세계잉여금				6,977,000	6,977,000	6,977,910	순세계잉여금 = 6,977,910
2. 이월금				0	4,274,500	4,274,500	
1. 이월사업비				0	4,274,500	4,274,500	이월사업비 = 4,274,500
세입합계				530,007,000	534,281,500	530,930,660	

# 2017학년도 세출결산서

(단위 : 원)

사업			예산액	예산현액	결산액	산출기초
정책	단위	세부				
1. 인적자원 운용			4,387,000	4,387,000	4,335,100	
1.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4,387,000	4,387,000	4,335,100	
1. 교직원연수			2,756,000	2,756,000	2,756,000	1. 자율연수 = 2,756,000 1. 학교운영비 = 2,756,000
2. 교직원복지			1,631,000	1,631,000	1,579,100	1. 학습공동체 운영 = 488,100 1. 학교운영비 = 488,100 2. 교직원문화행사 = 968,000 1. 학교운영비 = 968,000 3. 교직원퇴임식 = 123,000 1. 학교운영비 = 123,000
2.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105,768,000	107,130,500	103,782,860	
1. 급식 관리			11,086,000	11,086,000	10,962,280	
1. 학교급식운영			11,086,000	11,086,000	10,962,280	1. 비조리교급식운영 = 8,053,660 1. 학교운영비 = 913,660 2. 예비비및기타 = 7,140,000 2. 우유대금 = 2,908,620 1. 학교운영비 = 2,908,620
2. 보건 관리			4,543,000	4,543,000	4,423,980	
1. 학생및교직원보건안전관리			2,492,000	2,492,000	2,488,870	1. 보건실운영 = 342,800 1. 학교운영비 = 342,800 2. 학생건강검사 = 414,070 1. 학교운영비 = 414,070 3. 교의수당 = 140,000 1. 학교운영비 = 140,000

# 2017학년도 세출결산서

(단위 : 원)

사업			예산액	예산현액	결산액	산출기초
정책	단위	세부				
						4. 흡연예방실천학교운영(목) = 1,592,000 1. 학교운영비 = 1,592,000
		2. 학교환경위생관리	2,051,000	2,051,000	1,935,110	1. 먹는물관리 = 1,120,110 1. 학교운영비 = 1,120,110 2. 공기질관리 = 495,000 1. 학교운영비 = 495,000 3. 학교방역관리 = 320,000 1. 학교운영비 = 320,000
		3. 교육격차 해소	80,692,000	82,054,500	78,949,610	
		1. 방과후학교활동비지원	66,078,000	67,440,500	64,595,500	1. 농어촌대상자지원 = 64,595,500 1. 학교운영비 = 64,595,500
		2. 현장체험학습비지원	1,008,000	1,008,000	999,600	1. 현장체험학습지원금수입 = 999,600 1. 학교운영비 = 999,600
		3. 누리과정비지원	13,606,000	13,606,000	13,354,510	1. 유치원누리과정지원 = 13,354,510 1. 학교운영비 = 13,354,510
		4. 학생복지	9,447,000	9,447,000	9,446,990	
		1. 교육복지우선	4,000,000	4,000,000	4,000,000	1. 교육복지우선사업(목) = 4,000,000 1. 학교운영비 = 4,000,000
		2. 학생복지운영	5,447,000	5,447,000	5,446,990	1. 학생교과서구입 = 5,446,990 1. 학교운영비 = 5,446,990
		3. 기본적 교육활동	134,506,000	137,418,000	135,437,570	
		1. 교과 활동	107,672,000	110,584,000	109,250,220	

# 2017학년도 세출결산서

(단위 : 원)

사업			예산액	예산현액	결산액	산출기초
정책	단위	세부				
		1. 교과활동지원	7,286,000	7,286,000	7,089,610	1. 보결수업관리 = 540,000 1. 학교운영비 = 540,000 2. 학습준비물구입 = 2,929,110 1. 학교운영비 = 2,929,110 3. 보충과정운영 = 3,620,500 1. 학교운영비 = 3,620,500
		2. 과학교과활동	4,160,000	4,160,000	4,146,020	1. 교과운영 = 2,159,590 1. 학교운영비 = 2,159,590 2. 교구구입(목) = 1,986,430 1. 학교운영비 = 1,160,000 2. 비품구입비 = 826,430
		3. 체육교과활동	884,000	884,000	874,640	1. 교과운영 = 263,980 1. 학교운영비 = 263,980 2. 학생체육대회 = 610,660 1. 학교운영비 = 610,660
		4. 외국어교과활동	32,813,000	35,725,000	35,723,460	1. 교과운영 = 32,718,030 1. 학교운영비 = 32,718,030 2. 영어캠프 운영 = 3,005,430 1. 학교운영비 = 3,005,430
		5. 특수교육교과활동	900,000	900,000	900,000	1. 통합학급운영 = 900,000 1. 학교운영비 = 900,000
		6. 유치원교과활동	61,629,000	61,629,000	60,516,490	1. 교과운영 = 17,796,730

# 2017학년도 세출결산서

(단위 : 원)

사업			예산액	예산현액	결산액	산출기초
정책	단위	세부				
						1. 인건비 = 4,360,000
						2. 학교운영비 = 13,200,530
						3. 비품구입비 = 236,200
						2. 교직원연수 = 121,500
						1. 학교운영비 = 121,500
						3. 학생건강관리 = 404,000
						1. 학교운영비 = 404,000
						4. 환경위생관리 = 486,130
						1. 학교운영비 = 486,130
						5. 각종행사활동 = 2,054,980
						1. 학교운영비 = 2,054,980
						6. 방과후과정운영 = 289,730
						1. 인건비 = 289,730
						7. 학부모교육 = 739,440
						1. 학교운영비 = 739,440
						8. 학급환경정리 = 376,790
						1. 학교운영비 = 376,790
						9. 현장체험학습 = 1,758,000
						1. 학교운영비 = 1,758,000
						10. 기간제교원인건비(목) = 21,894,790
						1. 인건비 = 20,224,400
						2. 학교운영비 = 1,670,390
						11. 누리과정유아교육운영(목) = 13,354,510
						1. 학교운영비 = 13,354,510
						12. 특수교육대상교육비 = 180,000
						1. 학교운영비 = 180,000
						13. 기간제교원인건비 = 1,059,890
						1. 인건비 = 1,059,890

# 2017학년도 세출결산서

(단위 : 원)

사업			예산액	예산현액	결산액	산출기초
정책	단위	세부				
	2. 창의적 체험활동		26,834,000	26,834,000	26,187,350	
		1. 자율활동	19,409,000	19,409,000	18,765,320	
						1. 입학식행사운영 = 147,000
						1. 학교운영비 = 147,000
						2. 졸업식행사운영 = 1,473,000
						1. 학교운영비 = 1,473,000
						3. 학습발표회 = 1,907,940
						1. 학교운영비 = 1,907,940
						4. 교내행사운영 = 1,331,300
						1. 학교운영비 = 1,331,300
						5. 과학경연대회 = 583,350
						1. 학교운영비 = 583,350
						6. 체육대회출전 = 210,690
						1. 학교운영비 = 210,690
						7. 준거집단 = 238,560
						1. 학교운영비 = 238,560
						8. 학급교육활동경비 = 1,500,000
						1. 학교운영비 = 1,500,000
						9. 수학여행지원 = 1,100,000
						1. 학교운영비 = 1,100,000
						10. 학생회활동지원 = 15,000
						1. 학교운영비 = 15,000
						11. 로컬에듀 = 670,000
						1. 학교운영비 = 670,000
						12. 로컬에듀(창의적교육특구)(목) = 8,996,730
						1. 학교운영비 = 8,996,730
						13. 학교스포츠클럽운영(목) = 591,750
						1. 학교운영비 = 591,750

# 2017학년도 세출결산서

(단위 : 원)

사업			예산액	예산현액	결산액	산출기초
정책	단위	세부				
		2. 현장체험학습활동	6,236,000	6,236,000	6,233,810	1. 현장학습 = 5,540,310 1. 학교운영비 = 5,540,310 2. 계절스포츠체험 = 693,500 1. 학교운영비 = 693,500
		3. 동아리활동	1,189,000	1,189,000	1,188,220	1. 1교1환경교육 = 1,188,220 1. 학교운영비 = 1,188,220
4. 선택적 교육활동			89,271,000	89,271,000	86,142,730	
		1. 방과후학교 운영	83,764,000	83,764,000	80,737,580	
		1. 방과후학교운영	36,684,000	36,684,000	33,658,150	1. 문화예술교육 = 3,780,000 1. 학교운영비 = 3,780,000 2. 방과후학교운영 = 21,778,150 1. 학교운영비 = 21,778,150 3. 마을예술학교 운영(목) = 4,000,000 1. 학교운영비 = 4,000,000 4. 농어촌방과후학교운영(지자체) = 4,100,000 1. 학교운영비 = 4,100,000
		2. 돌봄교실운영	47,080,000	47,080,000	47,079,430	1. 돌봄교실 운영 = 47,079,430 1. 학교운영비 = 47,079,430
		2.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120,000	120,000	27,000	
		1. 다문화교육운영	120,000	120,000	27,000	1. 다문화가정학생멘토링지원 = 27,000 1. 학교운영비 = 27,000
		3. 독서활동	5,387,000	5,387,000	5,378,150	
		1. 독서활동운영	5,387,000	5,387,000	5,378,150	

# 2017학년도 세출결산서

(단위 : 원)

사업			예산액	예산현액	결산액	산출기초
정책	단위	세부				
						1. 독서활성화지원 = 5,378,150 1. 학교운영비 = 675,830 2. 비품구입비 = 4,702,320
5. 교육활동 지원			59,082,000	59,082,000	59,051,380	
		1. 교무업무 운영	1,546,000	1,546,000	1,545,380	
		1. 교무학사운영	1,546,000	1,546,000	1,545,380	1. 교무학사운영 = 374,000 1. 학교운영비 = 374,000 2. 학급환경정리 = 714,000 1. 학교운영비 = 714,000 3. 청소용품구입 = 457,380 1. 학교운영비 = 457,380
		2. 학습지원실 운영	12,651,000	12,651,000	12,646,640	
		1. 정보화실운영	12,651,000	12,651,000	12,646,640	1. 학교정보화지원 = 2,406,710 1. 학교운영비 = 1,991,770 2. 비품구입비 = 414,940 2. 소프트웨어 선도학교 운영 = 10,075,930 1. 학교운영비 = 5,251,120 2. 비품구입비 = 4,824,810 3.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교육 = 164,000 1. 학교운영비 = 164,000
		3. 교육여건 개선	36,285,000	36,285,000	36,261,260	
		1. 교육환경개선	36,285,000	36,285,000	36,261,260	1. 프린터구입 = 263,210 1. 비품구입비 = 263,210 2. 학교도서관현대화사업 = 24,991,720 1. 학교운영비 = 5,144,500

# 2017학년도 세출결산서

(단위 : 원)

사업			예산액	예산현액	결산액	산출기초
정책	단위	세부				
						2. 비품구입비 = 19,847,220 3. 특수학급 내부비품 지원 = 11,006,330 1. 학교운영비 = 3,711,000 2. 비품구입비 = 7,295,330
	4. 생활지도운영		8,600,000	8,600,000	8,598,100	
		1. 학생생활상담지도	8,331,000	8,331,000	8,330,100	1. 학생생활지도운영 = 330,100 1. 학교운영비 = 330,100 2. 배움터자원봉사자운영(목) = 6,340,000 1. 학교운영비 = 6,340,000 3. 학교부적응학생진단, 상담, 치유프로그램운영 = 600,000 1. 학교운영비 = 1,660,000
		2. 학생안전교육	269,000	269,000	268,000	1. 119재난안전체험 = 24,000 1. 학교운영비 = 24,000 2. 119물놀이안전체험 = 244,000 1. 학교운영비 = 244,000
	6. 학교 일반운영		136,493,000	136,493,000	131,104,720	
		1. 시설 장비 유지	83,825,000	83,825,000	83,124,240	
		1. 학교시설장비유지	83,825,000	83,825,000	83,124,240	1.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 19,562,540 1. 학교운영비 = 19,562,540 2. 연료비 = 773,000 1. 학교운영비 = 773,000 3. 시설관리용역 = 34,293,360 1. 학교운영비 = 34,293,360 4. 시설일반관리 = 25,061,570 1. 인건비 = 800,000

# 2017학년도 세출결산서

(단위 : 원)

사업			예산액	예산현액	결산액	산출기초
정책	단위	세부				
						2. 학교운영비 = 24,261,570 5. 폐기물처리 = 190,000 1. 학교운영비 = 190,000 6. 당직관리 = 2,300,000 1. 학교운영비 = 2,300,000 7. 화장실관리 = 943,770 1. 학교운영비 = 390,800 2. 비품구입비 = 552,970
		2. 학교운영 협력	1,000,000	1,000,000	915,980	
		1. 학교운영위원회운영	800,000	800,000	715,980	1. 학교운영위원회운영 = 715,980 1. 업무추진비 = 715,980
		2. 학부모협력	200,000	200,000	200,000	1. 학부모회운영 = 200,000 1. 학교운영비 = 200,000
		3. 학교기관 운영	51,668,000	51,668,000	47,064,500	
		1. 부서기본운영	30,183,000	30,183,000	27,224,110	1. 행정실운영 = 10,721,010 1. 학교운영비 = 10,511,510 2. 업무추진비 = 209,500 2. 교장실운영 = 4,612,200 1. 업무추진비 = 4,612,200 3. 교무실운영 = 3,990,140 1. 학교운영비 = 696,350 2. 업무추진비 = 1,174,980 3. 비품구입비 = 2,118,810 4. 사무용품구입 = 1,703,710 1. 학교운영비 = 1,703,710

# 2017학년도 세출결산서

(단위 : 원)

사업			예산액	예산현액	결산액	산출기초
정책	단위	세부				
						5. 업무용도서구입 = 255,000 1. 학교운영비 = 255,000 6. 간행물구독 = 60,000 1. 학교운영비 = 60,000 7. 재정보증수수료 = 61,740 1. 학교운영비 = 61,740 8. 사무용기기관리 = 5,820,310 1. 비품구입비 = 5,820,310
		2. 행정지원인력운용	10,438,000	10,438,000	9,647,820	1. 시설관리원인건비 = 8,557,980 1. 인건비 = 6,845,900 2. 학교운영비 = 1,712,080 2. 일용인부임 = 1,089,840 1. 인건비 = 1,089,840
		3. 병설유치원기본운영	11,047,000	11,047,000	10,192,570	1. 병설유치원일반운영 = 635,800 1. 학교운영비 = 635,800 2. 학교시설장비유지 = 8,511,970 1. 학교운영비 = 8,511,970 3. 일반행정사무관리 = 1,044,800 1. 학교운영비 = 1,044,800
7. 학교	재무활동		500,000	500,000	0	
	1. 예비비		500,000	500,000	0	
		1. 예비비	500,000	500,000	0	
세출합계			530,007,000	534,281,500	519,854,360	

## 다음연도 이월액 조서 (명시이월)

(단위 : 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액	이월 증감액	예산현액	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비고 (사유)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교육격차 해소	방과후학교활동비지원	66,078,000	1,362,500	67,440,500	64,595,500	64,595,500	2,845,000	0	기타

**제안  
안건명**

2017학년도 간중초등학교발전기금 결산(안)

**안건  
번호**

2018-20

발의년월일 : 2018. 4. 3.

제안자 : 학교장

소관부서 : 행정실

**1. 제안이유**

2017학년도 간중초등학교 학교발전기금 결산을 통하여 발전기금의 조성 및 집행의 타당성·합리성을 평가·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세입·세출결산 총괄표

(단위:원)

세입액	세출액	잔액	비고
5,110,370	2,762,000	2,348,370	

세입 결산 내역

(단위:원)

사업명	이월금 및 이자수입	접수액	계
장학금	2,510,370	2,000,000	4,510,370
수목이전비	0	600,000	600,000
합계	2,510,370	2,600,000	5,110,370

세출 결산 내역

(단위:원)

사업명	세입액	세출내역	잔액
장학금	4,510,370	2,200,000	2,310,370
수목이전비	600,000	562,000	38,000
합계	5,110,370	2,762,000	2,348,370

**3. 붙임**

○ 2017학년도 발전기금 결산 보고서 1부. 끝.

# 2017 회계연도 발전기금 결산 보고서

간중초등학교 운영위원회

## 1. 세입 세출 결산 총괄표

가. 세입액 :	5,110,370 원
나. 세출액 :	2,762,000 원
다. 잔 액 :	2,348,370 원

2. 세입결산내역 : "별첨"과 같음

3. 세출결산내역(사업내역) : "별첨"과 같음

## 2. 세입 결산 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이월금 및 이자수입	접수액	계
장학금	2,510,370	2,000,000	4,510,370
수목이전비	0	600,000	600,000
합 계	2,510,370	2,600,000	5,110,370

### 3. 세출 결산 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세입액	세출내역	잔액
장학금	4,510,370	2,200,000	2,310,370
수목이전비	600,000	562,000	38,000
합계	5,110,370	2,762,000	2,348,370